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15호 2009. 1. 23.

조 례

제79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794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9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8

공 시

제30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12
------	---------------	-------	----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근거 규정의 변경과 발전기획위원회 구성위원 수 상향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전문가의 고견을 구정발전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성과를 고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나.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다. 제3조(구성 등)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제1호 “중랑구의회 의원 2인”를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인“로 하고, 제4항에 단서를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당해 임기 내로 한다.” 같이 신설

- 라.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모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
- 마. 제5조(간사 등)중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시책담당주사가 된다” 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로 개정
- 바. 제7조 (위원의 해촉) 중 “각호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로 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구성 등)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항제1호 “중랑구의회 의원 2인”를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인“로 하고,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당해 임기 내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모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 (간사 등) 중 “간사와 서기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시책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중 “각호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2008.12.22)된 결정액을 기준으로 2009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 월 3,100,000원을 월 1,965,000원으로 조정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3,10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를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1,965,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21 법률 제87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08.7.9 대통령령 제20911)이 개정됨에 따라 구 관리조례 내용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신규조항 신설이 필요함.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

2. 주요골자

제8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가로등주에 표시방법 삭제

제29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시 관리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실명제 표시 실시

[별표 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서울특별시중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관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제1호중 “이상으로”를 “를”로 한다.

제23조제6항중 “제4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27조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한다”를 “하며,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로 하며,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 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 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 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8,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시 제30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중랑구청장

○ 일반명단 제공 : A4 용지 1매당 50원 내외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53.01원	A4용지 1매당 작성 비용
용지대	5.41원	○ 일반 복사용지(A4, 1BOX당 13,120원) - 13,120원 ÷ 2,500매(과지률 3%) = 5.41원
소모품비	24.60원	○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드럼·카트리지 일체형 (사용매수 7000매/A4기준) ○ 172,220원/1통 ÷ 7,000매 = 24.60원
기타경비	23원	○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A4용지 1매 작성

○ 라벨용 명단 제공 : 라벨용지 1매당 180원 내외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183.6원	A4용지 1매당 작성 비용
용지대	136원	○ 일반 복사용지(라벨(14칸), 1팩 13,200원) - 13,200원 ÷ 100매(과지률 3%) = 136원
소모품비	24.60원	○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드럼·카트리지 일체형 (사용매수 7000매/A4기준) ○ 172,220원/1통 ÷ 7,000매 = 24.60원
기타경비	23원	○ 전기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기타 소요비용 /라벨용지 1매 작성

○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 : 플로피디스크 1개, A4 용지 100매 기준 = 2,500원 내외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원	= (220원 × 디스크 개수) + (23원 × 면수)

○ 전산자료 복사본 제공 : CD 1개, A4 용지 100매 기준 = 2,750원 내외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초
계	원	= (450원 × 디스크 개수) + (23원 × 면수)

※ 산출기준금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산정되었음.